

23.12.15.(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대경 보좌관 (민병덕 의원실) 010-3201-987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이 투영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등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본사가 만남을 거부하면 유의미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본사의 물품구매 강요나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에 따른 분쟁 및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보고되었고, 을지로위원회는 매순간 가맹점주가 외치는 눈물의 호소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법률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서 절실한 요구와 목소리로 외쳤던 법안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이고,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로 호소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가맹지사(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 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어 많은 을들에게 희망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가맹점주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까지는 국회 본회의 처리, 대통령 공포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써 자영업자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공정거래 6법 중 하나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구성·협약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약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되어서 을들의 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12. 15. (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